

##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15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4년 월 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1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국가사무로 전환된 위탁사무를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” 개정으로 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사무’가 도지사권한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탁사무에서 삭제하고자 함.

3. 의안전문 : 따로 붙임

4. 신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따로 붙임

##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의 교통과 소관증 제12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구조문 대비표

【별표】

현행					개정안				
대상 실과	일련 번호	위탁대상 사무명	위탁대상 기관	근거 및 적용법규	대상 실과	일련 번호	위탁대상 사무명	위탁대상 기관	근거 및 적용법규
교통과	12	<p>○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각협회 소관별 다음의 권한</p> <p>· 경미한 등록사항 변경신고</p> <p>· 사업의 휴지 및 폐지신고</p> <p>· 등록사항변경신고 (다만 동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·양수 또는 상속신고를 포함하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제외)</p> <p>·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자 연수교육</p> <p>· 운수사업자사업자나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사업 등에 관한 보고서 또는 서류의 제출요청</p>	<p>충청북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,</p> <p>충청북도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,</p> <p>충청북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,</p> <p>충청북도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</p>	<p>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단서</p> <p>동법 제16조 동법 제21조</p> <p>동법 제2 조 제2항</p> <p>동법 제23조</p> <p>동법 제41조 제1항</p>			<삭 제>		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【지방자치법】

**제95조(사무의 위임등)**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무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.

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### 【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】

**제3조 (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)** 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者(이하 “운송사업자”라 한다)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·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·도지사에게 申告하여야 한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,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, 운송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⑤운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차를 수반하는 등록사항의 변경을 할 수 없다.

1.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
2.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차조치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

**제16조 (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·폐지신고)** ①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·도지사에게 申告하여야 한다.

②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 기타 일반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

**제21조 (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)** ①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·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을 한 자(이하 "운송주선사업자"라 한다)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·도지사에게 申告하여야 한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무실의 면적,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**제24조 (준용규정)** 제4조, 제7조, 제8조, 제10조(동조제5항 및 제7항을 제외한다), 제11조, 제12조(동조제4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), 제13조 내지 제16조, 제17조(第1항제11호를 제외한다),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제7조·제10조제6항 및 제12조제3호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"운송약관"을 "운송주선약관"으로 본다.

**제28조 (경영자연수교육)** 시·도지사는 운수사업자의 경영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영을 담당하는 임원(개인인 경우에는 운수사업자를 말한다)에 대하여 경영자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**제44조 (보고·검사)**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수사업자나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

당해 사업이나 당해 화물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수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·서류 그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.

1. 제3조 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한 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2. 화물운송질서 등의 문란행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3. 운수사업자의 위법행위 확인 및 운수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·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,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성명, 소속기관, 출입의 목적 및 일시 등을 기재한 서류를 상대방에게 교부하거나 관계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.

**제46조 (권한의 위탁)**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시·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·연합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### **【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】**

**제15조 (권한의 위탁)**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협회에 위탁한다.

1. 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변경신고
2. 법 제16조(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휴지 및 폐지신고
3.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변경신고